

훈 령

서울특별시 사용료·수수료조정심의규
정령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9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고 건 ㉔

◎ 서울특별시훈령제 676 호

서울특별시사용료·수수료조정심의회
규 정 제 지 규 정

서울특별시 사용료·수수료조정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
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장 고 건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 2288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
중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매입원증"을 "매입원
증 및 원리금 분할상환금"으로 하
고,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채증권의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공채의 매출일) 공채의 매
출일은 당해 공채증권의 실제 매
출일로 한다.

제 9 조제 1 항중 "지하철도건설추진법시
행령"을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동항제 3 호중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
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으로 한다.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공채증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 2 조 및 제 8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
로 공채증권을 매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1438 호 시

[별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증권양식

(앞쪽)

년 호 0000000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증권 금 원 발행일 년 월 일 이 증권은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배에 의하여 후면 기재조건으로 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	년 호 00000000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증권 매입필증
-----------------	--	---

원리금분할상환권(1차)	원리금분할상환권(2차)	원리금분할상환권(3차)	원리금분할상환권(4차)	공채증권 매입필증
년 호 00000000	년 호 00000000	년 호 00000000	년 호 00000000	금 원정(₩)
액면금액: 원	액면금액: 원	액면금액: 원	액면금액: 원	매입자성명
매출점:	매출점:	매출점:	매출점:	용도
매출일: 년 월 일	매출일: 년 월 일	매출일: 년 월 일	매출일: 년 월 일	징구기관
1차분할상환액	2차분할상환액	3차분할상환액	4차분할상환액	위와같이 서울특별시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지하철공채조배 제 3 조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에 의거 공채증권을
상 환 일	상 환 일	상 환 일	상 환 일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지급점:	지급점:	지급점:	지급점:	년 월 일
지급일: 년 월 일	지급일: 년 월 일	지급일: 년 월 일	지급일: 년 월 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매출점: (인)

보 1989.6.13 3

(뒷 쪽)

1. 이 채권은 무기명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다.
2. 이 채권의 이율은 년6%로 하며,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한다.
3. 이 채권의 이자는 2항의 이율로 복리로 계산하여 1차 상환금과 동시에 지급하고 2차이후의 이자는 년리로 계산하여 매년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4. 이 채권의 분할상환은 4차분할상환까지로 아래의 원리금 분할상환권과 상환으로 지급하며 최종상환은 이 채권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5. 이 채권은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하철공채조세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이 채권의 원금및 이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7. 이 채권은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원리금상환은 서울시 금고, 또는 서울시 소재 한국산업은행지점에서 지급한다.

원리금지급사항		
구 분	원리금액	
1 차	원금	원
	이자	원
2 차	원금	원
	이자	원
3 차	원금	원
	이자	원
4 차	원금	원
	이자	원
5 차	원금	원
	이자	원

-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것은 무효임.
 2. 이 매입필증은 여하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것은 무효임
 4. 이 매입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음.

(이 원리금 분할상환권은 상환청구시 원본과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기관담당자의 면전에서 절단하여야 합니다.)	(이 원리금 분할상환권은 상환청구시 원본과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기관담당자의 면전에서 절단하여야 합니다.)	(이 원리금 분할상환권은 상환청구시 원본과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기관담당자의 면전에서 절단하여야 합니다.)	(이 원리금 분할상환권은 상환청구시 원본과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환기관담당자의 면전에서 절단하여야 합니다.)
--	--	--	--

4 제 138 호 시

1989. 6. 1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 6 . 13 .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제2 어린이공원	영등포구영등포동 8가28,28-1	2,522.6	725.5 (감)	1,797.1	

나.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¹에 비치도면과 같음.

사 령

◎ 1989년 6월 12일과 4급기술직공무원면직 령제 24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성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공업기정

◎ 1989년 6월 13일과 6급공무원파견 령제 24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종파	사회과 파견 ('89.6.13 - '90.6.12)	중랑구연료계장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